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9
----------	------

2016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자 11명)
- 나. 발 의 일 : 2016년 8월 18일
- 다. 회 부 일 : 2016년 8월 22일
- 라.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인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를 요청하면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함(안 제17조).
- 고의적으로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안 제17조 단서 신설).
-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함(안 제17조의 2제1항 신설).
- 기록부에 재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6. 8. 26 ~ 2016. 9. 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동 개정조례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등의 분실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및 감사장으로 분류되고, '표창장과 상장'은 시장과 3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 소방서장이 수여하며, '감사장'은 계급과 관련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음.

※ 표창 분류

구 분	수여대상	수여 사유
표창장	①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
	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	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③ 개인 및 단체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
	④ 순직 공무원	공무수행 중 순직
상장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감사장	개인 및 단체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

가. 표창장 등의 재교부(안 제17조)

- 동 개정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7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표창장 등의 분실로 재교부 요청시 표창장을 재교부할 경우 표창을 받은 자의 사기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상에는 표창장 등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재교부 대신 사실확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표창은 표창권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표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 영예(榮譽)성을 감안하여 재교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훈법 시행령」에 따르면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 「상훈법 시행령」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③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략〉…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정부표창규정」 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발급 등)
 - ② 대통령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중략〉…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서울시장의 시민 표창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703건, 2015년 7,960건, 2016년 4,530건(10월 기준)이며, 최근 3년간 민간인 및 민간단체 재교부 요청 건은 97건(2014년 40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으로 나타났으며, 재교부 요청 주요사유는 개인보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감사장 수여 현황(공무원표창)

(기준 : 2016.10.31.)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7,226	5,749	5,650	6,271	6,495	3,061
표창장	24,944	5,363	5,240	5,634	5,912	2,795
상장	2,237	381	397	626	573	260
감사장	45	5	13	11	10	6

▶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감사장 수여 현황(시민표창)

(기준 : 2016.10.31.)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819	5,324	6,302	6,703	7,960	4,530
표창장	20,129	3,639	3,653	4,510	5,217	3,110
상장	10,213	1,602	2,541	2,111	2,600	1,359
감사장	477	83	108	82	143	61

▶ 최근 5년간 연도별 표창장 재교부 요청 건수 및 사유

○ 공무원 및 공공단체

연 도	요청건수	교부내역(용도)		비 고
		개인보관	기관제출	
2012	3	2	1	
2013	8	2	6	
2014	8	0	8	
2015	8	2	8	
2016	11	4	7	

○ 민간인 및 민간단체

연 도	요청건수	교부내역(용도)		비 고
		개인보관	기관제출	
2012	23	18	5	
2013	20	17	3	
2014	40	35	5	
2015	28	22	6	
2016	29	24	5	

- 집행부는 표창장 분실·파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 불가로 표창장 재교부가 남발될 경우 표창의 영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의 재교부 요청 시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기존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대로 표창장을 재교부할 경우 첫째,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 이전 표창권자의 명의로 표창장을 재교부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입증에 어려워 재교부가 남발될 경우 표창장의 영예성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표창장 등을 수여받았으나, 실제 이사 등 다양한 사유로 분실하여 표창 수여를 기리고자 하는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의 「상훈법」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표창권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2) 기록부의 비치(제17조의2)

○ 안 제17조의 2는 표창을 받은 자와 재교부 받은 자의 기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재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표창규정」

제15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9조의2(기록부 비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표창수여자에 대한 기록·관리는 「정부표창규정」 제19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는 등(동 규정 제15조) 표창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은 표창수여자의 관리 및 수여 사실 확인과 관련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17조).
-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7조의2).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379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17조).
-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7조의2).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7조의2 제2항 중 “재교부 사실”을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1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7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p> <p>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u>재교부 사실이</u>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7조(표창사실확인) (<u>현행과 같음</u>)</p> <p>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p> <p>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u>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u> 포함되어야 한다.</p>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

-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7조(표창사실확인) (<u>현행과 같음</u>)</p> <p>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p> <p>① <u>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u></p>